

## 2024 행정쟁송법 정오표(2024.02.05. 기준)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5	2 빈출 주제 분석 (* 1993년 ~ 2023년)	
	주제	출제 횟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각 5회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각 4회
	소의 이익, 사정판결(사정재결 포함), 노동행정심판, 소송의 병합	각 3회
	행정심판 재결의 유형, 객관적 소송, 피고적격, 행정심판전치주의, 의무이행소송, 심리판단의 기준시점, 고지제도, 행정심판의 종류, 입증책임	각 2회
	기판력, 재심청구, 소송참가, 소송의 종료 방식, 결과제거청구권, 예방적 금지소송, 재결 일반, 행정소송의 한계, 판결의 효력 일반, 재결의 효력, 심리 일반, 재판관할	각 1회
	주제	출제 횟수
기속력, 임시구제수단, 일부취소판결(재결 포함), 객관적 소송, 소의 이익, 기판력	각 2회	
고지제도, 심리판단의 기준시점, 피고적격, 선결문제, 예방적 금지소송, 행정심판 전치주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각 1회	
P13	2 빈출 주제 분석 (* 1993년 ~ 2023년)	
	주제	출제 횟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b>각</b> 5회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b>각</b> 4회
	소의 이익, 사정판결(사정재결 포함), 노동행정심판, 소송의 병합	<b>각</b> 3회
	행정심판 재결의 유형, 객관적 소송, 피고적격, 행정심판전치주의, 의무이행소송, 심리판단의 기준시점, 고지제도, 행정심판의 종류, 입증책임	<b>각</b> 2회
	기판력, 재심청구, 소송참가, 소송의 종료 방식, 결과제거청구권, 예방적 금지소송, 재결 일반, 행정소송의 한계, 판결의 효력 일반, 재결의 효력, 심리 일반, 재판관할	<b>각</b> 1회
	주제	출제 횟수
기속력, 임시구제수단, 일부취소판결(재결 포함), 객관적 소송, 소의 이익, 기판력	<b>각</b> 2회	
고지제도, 심리판단의 기준시점, 피고적격, 선결문제, 예방적 금지소송, 행정심판 전치주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b>각</b> 1회	
P13	〈2023년 시험의 준사례형 문제〉	
	<p>A시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甲은 운송사업 중 일부 노선을 같은 지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乙에게 양도하였고, A시의 시장 X는 위 양도·양수를 인가하였다. 이 노선에는 甲 이외에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丙이 일부 중복된 구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 인가처분으로 해당 구간의 사업자는 甲, 乙 丙으로 증가한다.</p>	<p>〈2023년 시험의 준사례형 문제〉</p> <p>A시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甲은 운송사업 중 일부 노선을 같은 지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乙에게 양도하였고, A시의 시장 X는 위 양도·양수를 인가하였다. 이 노선에는 甲 이외에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丙이 일부 중복된 구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 인가처분으로 해당 구간의 사업자는 <b>甲, 乙, 丙</b>으로 증가한다.</p>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17	(2) 행정쟁송법을 공부하는 마음가짐 이 과목의 학습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2) 행정쟁송법을 공부하는 마음가짐 이 과목의 학습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b>아니다.</b>				
P93	적극적으로는 ㉠ 집행정지대상인 처분의 존재, ㉡ 심판청구의 계속, ㉢ 중대한 손해의 발생, ㉣ 긴급한 필요의 존재를 요한다.	적극적으로는 ㉠ 집행정지대상인 처분의 존재, ㉡ 심판청구의 계속, ㉢ <b>중대한 손해 발생의 예방</b> , ㉣ 긴급한 필요의 존재를 요한다.				
P172	2. 형성의 소, 이행의 소, 확인의 소 <table border="1" data-bbox="259 587 1160 667"> <tr> <td>이행의 소</td> <td>원고가 피고에 대한 일정한 실체법상 이행청구권을 확정하고, 그에 의한 이행을 명령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td> </tr> </table>	이행의 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일정한 실체법상 이행청구권을 확정하고, 그에 의한 이행을 명령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	2. 형성의 소, 이행의 소, 확인의 소 <table border="1" data-bbox="1196 587 2096 667"> <tr> <td>이행의 소</td> <td><b>원고의 피고에</b> 대한 일정한 실체법상 이행청구권을 확정하고, 그에 의한 이행을 명령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td> </tr> </table>	이행의 소	<b>원고의 피고에</b> 대한 일정한 실체법상 이행청구권을 확정하고, 그에 의한 이행을 명령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
이행의 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일정한 실체법상 이행청구권을 확정하고, 그에 의한 이행을 명령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					
이행의 소	<b>원고의 피고에</b> 대한 일정한 실체법상 이행청구권을 확정하고, 그에 의한 이행을 명령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					
P177	㉤ 행위능력에 흠이 있는 행정행위 미성년인 공무원의 행위는 적법·유효하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들 공무원의 행위는 무효임이 원칙이다.	㉤ 행위능력에 흠이 있는 행정행위 미성년인 공무원의 행위는 적법·유효하다. <b>피성년후견인 또는</b> 피한정후견인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들 공무원의 행위는 무효임이 원칙이다.				
P184	행정상 법률관계에는 ① 국민간에 맺어지는 법률관계, ② 행정주체와 공무원 사이에 맺어지는 법률관계, ③ 행정주체 상호간에 맺어지는 관계가 있다.	행정상 법률관계에는 ① <b>행정주체와 국민 간에</b> 맺어지는 법률관계, ② 행정주체와 공무원 사이에 맺어지는 법률관계, ③ 행정주체 상호간에 맺어지는 관계가 있다.				
P199	㉦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원상회복 등의 청구소송 여기에는 ㉠ 처분이나 재결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청구(예 영업정지처분에 있어서 처분취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청구(예 과세처분에 있어서 과세처분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가 있다.	㉦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원상회복 등의 청구소송 여기에는 ㉠ 처분이나 재결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청구(예 영업정지처분에 있어서 처분취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청구(예 과세처분에 있어서 과세처분취소소송과 <b>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b> )가 있다.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210	<p>② 양자의 구별기준</p> <p>양자의 구별은 법규의 해석, 즉 해당 법문의 보호목적에 기준 으로 한다. 행정법규의 목적이 오로지 공익의 보호만을 목적으 로 하고 있는 경우(예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유지, 건전한 재정 의 유지, 국토의 균형된 발전)에는 반사적 이익이고, 개인이익 의 보호에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적 공권에 해 당한다(통설).</p>	<p>② 양자의 구별기준</p> <p>양자의 구별은 법규의 해석, 즉 해당 법문의 보호목적에 기준 으로 한다. 행정법규의 목적이 오로지 공익의 보호만을 목적으 로 하고 있는 경우(예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유지, 건전한 재정 의 유지, 국토의 균형된 발전)에는 반사적 이익이고, 개인이익 의 <b>보호도</b>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적 공권에 해당 한다(통설).</p>
P211	<p>(1) 의의</p> <p>개인적 공권이 성립되는 경로는 ① 자연권으로서 헌법에서 직 접 인정되는 것,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되는 것, ③ 관습 법으로 인정되는 것, ④ 집행행위(예 행정행위, 공법상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있다.</p>	<p>(1) 의의</p> <p>개인적 공권이 성립되는 경로는 ① 자연권으로서 헌법에서 직 접 인정되는 것,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되는 것, ③ 관습 법으로 인정되는 것, ④ 집행행위(예 행정행위, 공법상계약)에 <b>의해</b> 성립되는 것이 있다.</p>
P225	<p>② 구체적 판단</p> <p>일반적으로 각 경원자에 대한 인·허가 등이 배타적 관계에 있 으므로 경원관계의 존재만으로 타인에 대한 인·허가 등을 취소 할 법률상 이익을 갖는다고 본다. 판례도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더라도</p>	<p>② 구체적 판단</p> <p>일반적으로 각 경원자에 대한 인·허가 등이 배타적 관계에 있 으므로 경원관계의 존재만으로 타인에 대한 인·허가 등을 취소 할 법률상 이익을 갖는다고 본다. 판례도 <b>원고에 대한 거부처 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b> 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경원 자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더라도</p>
P256	<p>① 의의</p> <p>행정권한의 위임이란 행정관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 정기관에 실질적으로 이전하여, 그 다른 기관(수임기관)의 권 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p>	<p>① 의의</p> <p>행정권한의 위임이란 <b>행정관청이 법령에 따라 그의</b> 권한의 일 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실질적으로 이전하여, 그 다른 기관(수 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p>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259	① 의의 일정한 사유에 의거하여 행정관청이 자신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기관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경우로서, 이 때 그 다른 기관인 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행위하되,	① 의의 일정한 사유에 의거하여 행정관청이 자신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기관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경우로서, <b>이때</b> 그 다른 기관인 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행위하되,
P270	② 법원이 참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제16조 제2항,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3항).	② 법원이 참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b>제16조 제2항</b> ),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3항).
P297	1. 의의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명시하고 있다(제4조 제1호). 여기에서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취소소송의 대상은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 소극적인 거부처분,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된다.	1. 의의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명시하고 있다(제4조 제1호). 여기에서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취소소송의 대상은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 소극적인 거부처분, 이에 준하는 <b>행정작용</b> ,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된다.
P332	부관이 없는 처분으로의 변경신청후 그 불허가처분을 다투어야 한다는 사례 피고(경남도지사)가 원고에게 제1 대영호와 제38 청룡호에 대한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등선, 운반선 등 일체의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였고,	부관이 없는 처분으로의 변경신청후 그 불허가처분을 다투어야 한다는 사례 피고(경남도지사)가 원고에게 제1 대영호와 제38 청룡호에 대한 <b>기선망어업의</b> 허가를 하면서 등선, 운반선 등 일체의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였고,
P362	⇨ 357쪽에서 상술함	⇨ <b>369쪽</b> 에서 상술함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434	(3) 제도의 의미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속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3) 제도의 의미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b>절차의</b> 속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P435	①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 개관적 쟁송에서는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 <b>객관적</b> 쟁송에서는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P435	㉠ 부정설: 현행법상의 집행정지제도는 소극적으로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그 이상으로 행정청에게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은 대상으로 될 수 없다고 본다(다수설).	㉠ 부정설: 현행법상의 집행정지제도는 소극적으로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그 이상으로 행정청에게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은 <b>대상이</b> 될 수 없다고 본다(다수설).
P435	㉢ 반대설: 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의 경우 집행정지가 있으면 일단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반대설: 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의 경우 집행정지가 있으면 일단 시험을 <b>치를</b> 수 있다는 것이다.
P437	① 본안이 계속중일 것 또한 본안소송의 제기 자체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대판 1999.11.26. 99부3),	① 본안이 계속중일 것 또한 본안소송의 제기 자체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b>대결</b> 1999.11.26. 99부3),
P479	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재산의 '취득'에는 토지 및 임야조사 사업을 통한 사정(사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재산의 '취득'에는 토지 및 임야조사 사업을 통한 사정( <b>사정</b> )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P552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의 판단 기준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의 판단 기준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b>종전 처분에</b>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586	1. 재판관할 결정으로 정당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제38조 제1항·제8조 제2항),	1. 재판관할 결정으로 정당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P597	3. 가구제의 문제 (1) 예외적 집행정지	3. 가구제의 문제 (1) 예외적 집행정지
P613	㉔ 논거 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의무이행소송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	㉔ 논거 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의무이행소송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점,
P670	이 노선에는 甲 이외에도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자 丙이 일부 중복된 구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 인가처분으로 해당 구간의 사업자는 甲, 乙 丙으로 증가한다	이 노선에는 甲 이외에도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자 丙이 일부 중복된 구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 인가처분으로 해당 구간의 사업자는 甲, 乙, 丙으로 증가한다
P679	이 노선에는 甲 이외에도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자 丙이 일부 중복된 구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 인가처분으로 해당 구간의 사업자는 甲, 乙 丙으로 증가한다.	이 노선에는 甲 이외에도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자 丙이 일부 중복된 구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 인가처분으로 해당 구간의 사업자는 甲, 乙, 丙으로 증가한다.